

## 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최 원 석\* · 이 영 재\*\*

### 〈차 례〉

- |                                |                                    |
|--------------------------------|------------------------------------|
| I. 시작하며                        | IV.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민사법 상 법적지위와 개선방안 |
| II. 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시각        | V. 맺으며                             |
| III.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 법 관련 규정과 주요내용 |                                    |

핵심주제어: 평위 사건, 착한사마리아인법, 법적지위, 중국민법, 사회문제, 책임면제

### I. 시작하며

2006년 중국 난징(南京)에서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 평위(彭宇)라는 청년이 밀집한 군중에 의해 밀쳐져 쓰러진 한 할머니를 부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할머니는 자신을 밀친 사람이 평위(彭宇)라고 주장하

2019년 07월 30일 접수, 2019년 08월 14일 수정, 2019년 08월 16일 게재확정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ceons56@hanmail.net

\*\* 북경대학교 법학원, lojy00@naver.com

면서 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 등 13만 위안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sup>1)</sup> 이 사건은 그동안 ‘공자의 나라’라 대표되는 윤리의식과 타인의 도움에 인정으로 대한다는 중국의 전통유산이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우선주의에 변질되면서 사회 전반에 ‘타인의 배려에는 비용과 책임이 든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곳곳에서 발생한 평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도움의 손길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이른바 ‘내가 돕다가 혹시 소송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도와야해’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퍼졌으며, 심지어는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평위 사건을 예로 들어 도덕행위에 위험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평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중국 내 국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평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

1) 이른바 ‘평위(彭宇)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6년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당시 일용직 근로자인 평위는 버스를 타려고 밀집한 군중에게 밀쳐져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줬는데, 향후 도리어 그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다. 할머니는 평위가 바로 할머니를 밀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할머니는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고 의료비가 적지 않게 나갔으니 평위가 13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위는 자신은 당시 2번째 버스에서 내리는 중이었으며 할머니는 3번째 차량을 타러 가는 길이었으므로 자신이 할머니를 밀쳐 다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관계를 내놓아 자신은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옳다”며 평위가 할머니에게 4만 위안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평위는 이에 항소했고 2심에서 민사합의를 거쳐 고소가 취하되며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 부축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중국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 부재 현상이 드러났다.

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II. 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시각

착한 사마리아인은 서방 기독교 문화에서 유래된 관용어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본래 뜻은 “선량한 사람, 정의로운 자”인데, 이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친 것을 보고 다들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이를 구제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성경의 이러한 개념을 빌려 제정한 법률을 뜻한다.<sup>2)</sup>

현재 국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입법이 비교적 체계적이며 잘 정비되어 있다.<sup>3)</sup> 이하에서는 대륙법계과 영미법계 주요국가의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한다.

2) Mitchell McInnes(1992), Good Samaritan Statute: a summary and analysis, 26 *U. Brit. Colum. L. Rev.* 239, p.239.

3) 刘鑫(2017), 国外好撒玛利亚人法及对我国的立法启示, 「法学杂志」, 第9期, p.46.

## 1. 대륙법 국가의 착한사마리아인법 개요

### 1) 프랑스의 착한사마리아인법

프랑스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비교적 특수하며, 형사와 민사 입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형법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본인 혹은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만 5천 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sup>4)</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는 (1) 피구조자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고, (2) 잠재적 구조자가 구조할 능력이 있으며, (3) 구조는 잠재적 구조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며, (4) 잠재적 구조자가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sup> 구조의무에 관한 프랑스법 규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형벌의 엄격성이며, 구조자의 부작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sup>6)</sup> 또한, 사고 피해자가 방관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관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구조가 행해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근거로 방관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구조자에게 공평치 못한 면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불가항력적 요소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방관자가 구조를 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필연적인

4) CODE PENAL [C.PEN.] art.223-6(Fr.)

5) Peter M. Agulnick & Heidi V. Rivkin(1998), Criminal Liability for Failure to Rescue: A Brief Survey of French and American Law, 8 *TOURO INT'L L. Rev.* 93, p.110.

6) Jennifer L. Groninger(1999), No Duty to Rescue: Can Americans Really Leave a Victim Lying in the Street? What Is Left of the American Rule, and Will It Survive Unabated, 26 *Pepp.L. Rev.* 2, p.371.

7) Jennifer L. Groninger(1999), No Duty to Rescue: Can Americans Really Leave a Victim Lying in the Street? What Is Left of the American Rule, and Will It Survive Unabated, 26 *Pepp.L. Rev.* 2, p.371.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구조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sup>8)</sup>

## 2) 독일의 착한사마리아인법

독일 또한 중국의 평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이에 독일의 형법에는 긴급구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형법은 불의의 사고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 긴급할 시점에 구조할 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잠재적 위험을 주지 않거나 기타 중요한 직책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하에 구조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sup> 이 조문은 적용 대상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1) 구조의무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2) 구조자는 구조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구조는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불러오거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정은 프랑스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처벌 수위가 프랑스에 비교해 약한 편이다.

## 2. 영미법 국가의 착한사마리아인법 개요

### 1) 미국의 입법 현황

1959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이 법의 규정은 다소 특별했는데, 이는 타인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

8) 이에 대한 견해로는, Jay Silver(1985), *The Duty to Rescue: A Reexamination and Proposal*, 26 *Wm. & Mary L. Rev.* 423, pp.428-429.

9) *Strafgesetzbuch [STGBI [Penal Code], §323c (Ger.)*.

10) 1959 Cal. Stats. 1959, ch.1507 (current version at Cal. Bus. Prof. Code § 2395)(West Supp. 1987)

하는 전문직 종사자가 구조과정에서 경미한 과실로 구조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시작으로 1983년까지 미국 각 주 및 콜롬비아 특구, 푸에르토리코와 바이킹 제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구조자들에게 상이한 면제권을 제공하였다.<sup>11)</sup> 현재 미국 각 주에는 각각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있다. 각 주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즉, 총칙으로만 보면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적용되는 주체 범위, 두 번째는 면책 문제이다.<sup>12)</sup> 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구조의무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성질의 규정이 있다. 첫 번째는 소극적 규정으로, 구조자와 피구조자 사이에 상호구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조를 시행하는 자는 민사책임의 면책을 받는다. 미국 주법의 절대다수는 소극적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민사책임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민사소송법의 “민사책임의 면제” 부분의 하나 또는 여러 조항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적극적 규정으로, 구조자와 피구조자 간에 어떠한 형식의 구조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구조를 시행하는 자는 민사책임의 면책을 받는다.<sup>13)</sup>

### (1)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

현재 로드아일랜드주,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버몬트주, 하와이주 그리고 워싱턴 D.C는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형태를 채택한 상태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구조자의 개입이

11) Mason, Robert A.(1987), Good Samaritan Laws - Legal Disarray: An Update, 38 *Mercer L. Rev.* 1439, p.1442.

12) Stewart PH, Agin WS, Douglas SP(2013), What does the law say to Good Samaritans?: A review of Good Samaritan statutes in 50 states and on US airlines. 143 *Chest* 1774, pp.1774-1783.

13) 吕莹(2013), 见义勇为者权益保障的法律完善, 「陕西理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第3期, p.56.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기타 합법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개 유사하며, 구조자의 면책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구조를 받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어야만 한다. (2) 구조자는 주관적으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구조는 구조자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로드아일랜드주의 법률은 긴급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경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14)</sup>

본 법률은 구조의무 발생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1)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발적 사고나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2) 구조의무의 방식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경찰 혹은 전문 인력에 도움을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sup>15)</sup> 그러나 이 조항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이나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즉, 구조행위가 구조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구조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일반인의 구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조건의 설정을 통해 구조의무의 발생을 제한하였다. 또한, 구조의무를 위반한 법률책임과 형벌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워싱턴 D.C의 경우 전형적인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한 주이다. 워싱턴D.C는 앞서 1978년에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였는데, 비극적인 사고의 피해자 조이 레빅(Joey Levick)의 이름에서 이름을 따온 ‘조이 레빅 법

14) R. I. GEN. LAWS §11-56-1 (2012).

15) 陈清(2012), 英美法系侵权法上救助义务研究, 「河北法学」, 第7期, p.179.

안(The Joey Levick Bill)<sup>16)</sup>을 통해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도 제정되었다. 워싱턴 D.C의 주법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up>17)</sup>

## (2)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위 6개 주가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채택한 것과 달리, 미국의 절대다수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구조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법률의 내용은 대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sup>18)</sup> 예를 들어, 어떤 주의 법은 의사들에게만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주들은 다른 의료진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주들은 경찰, 소방관 그리고 다른 응급 서비스 직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기도 한다.<sup>19)</sup> 그리고 어떤 주들은 사고 피해자에게 긴급구조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면책특권을 확대하기도 한다.<sup>20)</sup> 애리조나주의 경우, 근무 허가를 받은 의료 서비스 요원과 허가를 받은 구급차 수행원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긴급한 사건의 현장에서 선의로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은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 또는 기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sup>21)</sup> 이 주의 법은 모든 선의

16) 1995년 시택(Sea Tac) 인근에서 집단구타를 당한 뒤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사망한 조이 레빅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가 정부를 설득하여 입안되었다. 이 법안은 구타 및 강도 등 범죄 피해자를 현장에서 병원치료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범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17) Melody J. Stewart(1998), How Making the Failure to Assist Illegal Fails to Assist: An Observation of Expanding Criminal Omission Liability, 25 *Am. J. Crim. L.* 385, p.390.

18) Frank B. Mapel & Charles J. Weigel(1981), Good Samaritan laws--who needs them?: The current state of Good Samarita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21 *S. Tex. L.J.* 327, pp.330-331.

19) Frank B. Mapel & Charles J. Weigel(1981), Good Samaritan laws--who needs them?: The current state of Good Samarita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21 *S. Tex. L.J.* 327, p.327.

20) Frank B. Mapel & Charles J. Weigel(1981), Good Samaritan laws--who needs them?: The current state of Good Samarita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21 *S. Tex. L.J.* 327, p.327.

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조자의 일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다. 이러한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주별로 법이 보호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제한적인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 3. 각국의 입법 내용 비교

미국 및 유럽국가의 착한사마리아인법에 관한 규정은 나라별로 다른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국가의 역사적 문화 및 도덕적, 법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법체계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대부분 구조행위를 시민의 의무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 개인주의가 덜하고 근대적 복지 체제의 영향으로 구조의무 관련 규정이 확립되어 있다. 각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구조행위를 의무로 규정할지에 따라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나뉘며, 대다수 주가 소극적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 구조행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형태와 유사하다.

유럽 국가 및 미국의 미네소타주, 버몬트주, 위스콘신주 등은 모두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편이며,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 또한 매우 적다. 그에 비해 유럽 국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구조행위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조의무는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

21) ARIZ. REV. STAT. ANN. §32-1471 (1986).

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다르게 보호하며, 보호를 받는 조건 또한 다르지만, 유럽 국가의 경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적용받는다. 그 외에, 전자의 경우 처벌의 면제를 강조하여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구조의 의무를 강조하며 위험에 처한 자를 보고 구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III.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과 주요내용

서방 국가에서는 종교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을 빌려 선의의 구조자를 표현하지만, 중국의 경우, 견의용위(见义勇为, 정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뛰어들다)라는 사자성어를 이용해 이를 지칭하며, 착한사마리아인법 또한 견의용위법이라 주로 불린다.

중국의 경우 착한사마리아인법에 관한 단행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2006년 중국의 사회적 도덕성을 50년이나 후퇴시켰다고 비난받는 펑위(彭宇)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은 내외적으로 몰인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 필요성 또한 고조됐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중국에서는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법규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입법화해왔으며, 지난 2017년 민법총칙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에 속하며,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1. 민사법의 관련 규정

### 1) 민법총칙

중국의 경우, 민법총칙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정식으로 마련하기 전부터 민법총칙, 관련 사법해석, 불법행위법 등의 법률이 각각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해왔다.

민법총칙은 통일된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 민법총칙 제정 전 민사 기본규정의 역할을 맡았던 법으로써 현재 여전히 민사법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그 내용이 총칙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시 총칙의 규정을 우선시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민법총칙 제109조는 국가, 집단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 및 인신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수익자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철저한 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의 의견 (시행)(关于贯彻执行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제142조는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침해자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수익자에게 수익자의 수익이 얼마인지와 그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인신 손해배상 안전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 15조에 따르면 국가, 집단 또

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신 피해를 보았을 경우, 침해자가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침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수익자에게 수익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 또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침권행위법 제23조는 타인의 민사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 및 제재하기 위하여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 침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자가 도망쳤거나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시, 수익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권책임법의 내용은 민법총칙, ‘의견’ 및 ‘해석’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4) 민법총칙

민법총칙 제183조와 제184조는 중국 민사법 중 착한사마리아인법 체계의 핵심내용이며 앞서 서술한 민법총칙 및 관련 사법해석의 내용을 취합 및 보완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민법총칙 제183조는 타인의 민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민사책임을 지며, 수익자가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4조는 긴급구조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총칙은 이 두 조문을 통해 구조자에 대한 피구조자의 보상과 가해자의 배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불명되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피구조자의 배상은 강

제적인 의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자는 피구조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 면책한다고 규정하였다.

## 2. 국무원의 행정법규

국무원(国务院)이 2012년 7월 발표한 「견의용위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见义勇为人员权益保护的意见)(이하 의견)은 국가는 공민이 법적 직책, 법적 의무 외에 국익, 사회적 공공 이익 및 타인의 인신, 재산의 안전을 위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보호를 가하여야 하며, 그들의 합법 권익 또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은 견의용위자의 권익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견의용위 행위로 위해 사망한 경우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책 또한 마련하였다. 또한, ‘의견’은 남을 구하다 사망한 구조자의 경우, 열사 평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에 따라 열사로 지정되며, 유가족은 「열사표창조례(烈士褒扬条例)」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지방법규

### 1) 선전경제특구 구조인 권익 보호 규정

중국의 각 지역 입법기관은 민법총칙이 구체화한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초를 마련하기 전부터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입법에 힘쓰고 있었다.

2013년 8월 1일에 제정된 「선전경제특구 구조인 권익 보호 규정(深圳经济特区救助人权益保护规定)(이하 규정)은 비록 10개의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조인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법률로서 큰 호평을 받았다. 「규정」 제4조는 피구조자가 구조 과정 중 구조자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거나 구조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할 시, 이

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5조는 피구조인이 사실을 날조하는 등의 행위로 구조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시, 구조인이 피구조인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상하이시 응급구조 조례

2016년 11월에 제정된 「상하이시 응급구조 조례(上海市急救医疗服务条例)」은 응급구조 능력을 갖춘 자가 위급한 환자에게 현장 구조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는 구조자의 현장 긴급구조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환자에게 피해를 줬을 시, 구조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시 외에 북경시, 항저우시 역시 이와 비슷한 조례를 입법화하였다.

## 4. 형법의 관련 규정

중국의 형법 제21조는 국가, 공공의 이익 및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긴급한 긴급피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착한사마리아인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몇몇 국가의 형법이 규정한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 형태가 아닌 중국 민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연장선으로 보인다.<sup>22)</sup>

---

22) 구체적 입법례에 대하여는, 马俊寅(2017), 好撒玛利亚人法与我国见义勇为法之比较研究, 「中小企业管理与科技(下旬刊)」, 第3期, p.168.

## IV.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민사법 상 법적지위와 개선방안

### 1. 민사법 상 법적지위

#### 1) 견의용위(见义勇为)와의 차이와 민사법적 이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주된 목적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자진해서 구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피해를 준 사람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미국의 몇몇 주법은 구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조 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때 중상을 입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견의용위(见义勇为, 정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뛰어들다)라고 칭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내포와 외연은 중국의 견의용위에 비하면 다소 좁은 편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주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사람에게 대한 구조를 다룬다.

그러나 중국의 견의용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에 대한 구조뿐 아니라 재난구조 등 국가나 사회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sup>23)</sup> 견의용위는 당사자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행위이며, 대다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당사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sup>24)</sup> 현재 많은 국가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입법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때 자신의 과실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23) 马俊寅(2017), 好撒玛利亚人法与我国见义勇为为法之比较研究, 「中小企业管理与科技(下旬刊)」, 第3期, p.169.

24) 刘鑫(2017), 国外好撒玛利亚人法及对我国的立法启示, 「法学杂志」, 第9期, p.46.

입혔을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 2) 민사책임면제로서의 법적지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현행 민사관련 법률에서 서양의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중국전통의 견의용위에 근거하여 중국만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이나 견의용위는 모두 구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타인이 구제를 장려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법의 각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민법총칙 제184조에서는 구조자가 구조행위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법통칙 제109조와 침권책임법 제23조에서 구조자가 구조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하여 구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구조행위 중 구조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어떻게 구조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조자의 구조행위로 발생하는 구조자 자신이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소극적 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말하는 민사법적 손배배상 및 책임면제의 보장이다.

## 2. 민사책임면제적 지위로서의 입법 상 문제점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민법총칙이 제정되면서 통일된 입법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이러한 규정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 중국식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sup>25)</sup> 즉, 앞서 예로 들은 평위 사건과 같이 당시에 착한사마리아인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의 분배나 면책조항의 전제 등이 미비하여 구조

25) 郑丽清(2016), 危难救助者民事责任豁免研究——以美国《好撒玛利亚人法》为视角,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p.46.

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민사법적 입법 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1) 면책조항 전제와 보상범위의 불명확

민법총칙 제184조가 면책조항으로서 그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긴급’구조행위를 행한 구조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자가 ‘수익자’에 속하는지 제183조와 제184조 조항의 규정만 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민법총칙 제183조의 보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상범위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의 수익범위 내에서 보상할 것일지, 아니면 구조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제183조에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 2) 구조자의 면책범위의 불명확

구조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총칙 제184조에 따르면, 긴급구조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4조에는 단서조항이 따로 없는데, 이는 구조자가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하기만 한다면, 구조자는 법률상의 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구조자가 구조 과정 중 주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진다면, 구조자가 누리는 행위의 자유는 구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즉 구조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구조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3) 구조행위 중 구조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보전

긴급구조행위 중 구조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가 민사책임을 지는지, 가해자도 수익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구조자의 권익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국가가 최후의 배상책임자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4) 증명책임 분배의 불명확성

증명책임의 분배가 불명확하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명책임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데, 구조상황이라는 특수함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증명책임 분배원칙은 구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sup>26)</sup>

## 3.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민사법적 개선방안

### 1) 통일된 착한사마리아인법 제정

현재 중국에 비록 민법총칙, 민법통칙, 지방법규 등 관련 입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전 국민이 구조에 대해 반감이 없도록 하고, 제2의 彭宇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된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 이 법률의 제정은 외국의 성숙한 사마리아인 법 체제를 참고하여 중국 현 상황에 들어맞도록 진행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당초 중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할 시, 외국의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 형식을 도입

26) 郑丽清(2016), 危难救助者民事责任豁免研究——以美国《好撒玛利亚人法》为视角,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p.48.

한 것은 중국의 사회적 정서와 적합한 선택이다.<sup>27)</sup> 이러한 전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은 현재 중국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모호함 또한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봄 직하다.

## 2) 구조자 면책 제도의 개선

민법총칙 제184조에 따르면, 긴급구조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구조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28)</sup>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면책 범위에 제한을 두어,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길 경우, 구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피해의 확대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3) 증명책임의 적절한 배분

착한사마리아인법 중, 구조 상황이라는 특수함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민사소송법 증명책임 분배 원칙은 구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착한사마리아인법은 피구조자가 이에 상응한 증명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몇몇 지방법규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2013년 8월 1일에 제정된 ‘선진경제특구 구조인 권익 보호 규정’(<深圳经济特区救助人权益保护规定>)은 피구조자가 구조 과정 중 구조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가중했다고 주장할 시, 피구조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주장

27) 马红珍(2014), 从“好撒玛利亚人法”看社会诚信建设, 「中外企业家」, 第17期, p.215.

28) 郑丽清(2016), 危难救助者民事责任豁免研究——以美国《好撒玛利亚人法》为视角,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p.46.

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구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 4)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주된 입법 목적은 사람들이 구조행위를 행하도록 격려하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이다.<sup>30)</sup> 만약 미국의 몇몇 주의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긴급구조행위를 공민의 일반 의무로서 법으로 명시하고, 구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이를 통하여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 또한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도입은 중국 사회적 정서 및 여러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 V. 맺으며

착한사마리아인법은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타인을 구조한 구조자에게 주어지는 면책권인 동시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각 나라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정서 및 문화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규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은 적극적

29) 刘鑫(2017), 国外好撒玛利亚人法及对我国的立法启示, 「法学杂志」, 第9期, p.50; 郑丽清(2016), 危难救助者民事责任豁免研究——以美国《好撒玛利亚人法》为视角,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p.48.

30) 马红珍(2014), 从“好撒玛利亚人法”看社会诚信建设, 「中外企业家」, 第17期, p.215.

착한사마리아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다른 형태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앞서 소개한 ‘평위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도덕성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상실이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 즉,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거나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의 일’로 보는 몰인정한 사회로 변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중국전통의 미덕인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입법형태를 고려하여 소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적극적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중국의 사회적 정서나 분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중국이 차근차근 개선해나가야 할 점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중국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도덕성 회복은 단순히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밖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되살리려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노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刘鑫(2017), 国外好撒玛利亚人法及对我国的立法启示, 「法学杂志」, 第9期.
- 吕莹(2013), 见义勇为者权益保障的法律完善, 「陕西理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第3期.
- 马俊寅(2017), 好撒玛利亚人法与我国见义勇为法之比较研究, 「中小企业管理与科技(下旬刊)」, 第3期.
- 马红珍(2014), 从“好撒玛利亚人法”看社会诚信建设, 「中外企业家」, 第17期.
- 郑丽清(2016), 危难救助者民事责任豁免研究——以美国《好撒玛利亚人法》为视角, 「福建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1期.
- 陈清(2012), 英美法系侵权法上救助义务研究, 「河北法学」, 第7期.
- Peter M. Agulnick & Heidi V. Rivkin(1998), Criminal Liability for Failure to Rescue: A Brief Survey of French and American Law, 8 *TOURO INT'L L. Rev.* 93.
- Stewart PH, Agin WS, Douglas SP(2013), What does the law say to Good Samaritans?: A review of Good Samaritan statutes in 50 states and on US airlines, 143 *Chest* 1774.
- Frank B. Mapel & Charles J. Weigel(1981), Good Samaritan laws--who needs them?: The current state of Good Samarita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21 *S. Tex. L.J.* 327.
- Jay Silver(1985), The Duty to Rescue: A Reexamination and Proposal, 26 *Wm. & Mary L. Rev.* 423.
- Jennifer L. Groninger(1999), No Duty to Rescue: Can Americans Really Leave a Victim Lying in the Street? What Is Left of the American Rule, and Will It Survive Unabated, 26 *Pepp.L. Rev.* 2.
- Mason, Robert A.(1987), Good Samaritan Laws - Legal Disarray: An Update , 38 *Mercer L. Rev.* 1439.
- Melody J. Stewart(1998), How Making the Failure to Assist Illegal Fails to Assist: An Observation of Expanding Criminal Omission Liability, 25 *Am. J. Crim. L.* 385.
- Mitchell McInnes(1992), Good Samaritan Statute: a summary and analysis, 26 *U. Brit. Colum. L. Rev.* 239.

국문초록

## 중국 민사법 상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최 원 석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 영 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도덕과 법률은 모두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개념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 인간의 합법적 권익, 사회의 안정 및 평화, 사회의 정의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탄 및 처벌이 바로 그 가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서 도덕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도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법률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곧 본래 도덕의 영역이라고 간주하던 문제를 법률로써 규범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며, 동시에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선행으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책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평위 사건을 기점으로 구조자가 피구조자를 구조하고도 피구조자가 되려 구조자를 고소하는 등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중국 내 국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민사법, 형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결정, 국무원이 발표한 행정법규, 각 지역의 지방법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관련 규정을 입안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민법총칙에서 착한사마리아인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정식으로 중국식 착한사마리아인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평위 사건 이후 중국이 그동안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던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법률로 규범함에 있어 민사법적 지위를 검토한다. 이에 도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제 등에 대하여 중국의 전통적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에 주요국의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입법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중국 민사법에서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핵심주제어:** 평위 사건, 착한사마리아인법, 법적지위, 중국민법, 사회문제, 책임면제

Abstract

## **Legal Status of Good Samaritan Law in Chinese Civil Law**

**Choi, Won-Seuk**

Dong-A Univ. Law Research Institute

**Lee, Young-Jae**

Peking Univ. Law School

Morality and law are both closely related as norms of our society, but the two concepts have distinct differences. However, morality and law ultimately pursue the same values, It is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man, the stability and peace of society, and the punishment and condemnation to the action that harms the justice and well-being of society. Thus, in areas where morality can function sufficiently as a norm in our society, laws do not need to interfere, and in areas where morality does not function effectively, laws can play a complementary role. Good Samaritan law refers to prescribing the problems which originally regarded as the area of morality as a law. The Good Samaritan Law is a legal system at which one can be punished if they do not help those in danger, and at the same time, gives immunity to those who save people by good deeds without any legal obligation.

Starting from Peng Yu incident,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so-called backwater inciden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China, with rescuer seeking to become victims of rescuee suing them, which has led to growing distrust among the public in China. This raised the ne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Good Samaritan Law in China, and draf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Good Samaritan

Law in various areas, including civil law, criminal law, decisions issu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dministrative laws announced by the State Council and local laws in each region.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ood Samaritan Law were add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took effect in 2017, and the basis of the Chinese-style Good Samaritan Act was formally laid.

This paper concerns its civil legal status in prescribing the Good Samaritan Law as its law in China, which has been regarded as the domain of morality. In this regard, we analyze the traditional Chinese solutions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ral actions, such as the damages made by moral actions. In response, the legislative status of the Good Samaritan Act in major countries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at of China's, thus,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hinese civil law.

**Key words:** Peng Yu Incident, Good Samaritan Law, Legal Status, Chinese Civil Law, a social problem, liability exemption